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282호

「의료급여법」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한 「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」(보건복지부고시 제2021-340호, 2021.12.29.)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
2023년 12월 28일

보건복지부장관

##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

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5호서식]

##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(연속혈당측정용 전극용)

※ 그 밖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앞 쪽)

① [ ] 재발급

보장기관명(기호)						
② 진료받은 사람	성명	주민(외국인)등록번호				
	전화번호	휴대전화번호				
	주소					
진료과목		상병명		상병코드		진단확인일

### 처방전 확인사항

당뇨병 구분	[ ] 제1형 당뇨병
제1형 당뇨병 * (1)(2) 동시 만족	(1)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[ ] c-peptide 0.6ng/ml 이하 [ ] 경구포도당섭취자극(또는 글루카곤 주사, 식사 후 등) 후 1.8ng/ml 이하 [ ] 24시간 소변 시펩타이드(C-peptide) 수치가 30 µg/24hr 미만 [ ] 최초 진단시 당뇨병성케톤산증(DKA)의 병력 [ ] 항글루타민산탈탄산효소항체(anti-GAD antibody) 등 체도 또는 인슐린 등에 대한 자가항체 양성인 경우
구분	(2) [ ] 인슐린 투여
③ 확인사항	
제1형 당뇨병	[ ] 연속혈당측정 시작일 ( ) ~ 종료일 ( ), 기간 동안 착용일수 ( )일 또는 착용비율 ( )% [ ] 당 평균값 ( ) mg/dl [ ] 변동계수 ( )% 혹은 표준편차 ( ) mg/dl [ ] 당화혈색소 검사내역 : 시행일 ( ), 검사수치 ( )%

### 처방 및 지시사항

④ 제품명

⑤ 총 처방기간 일

### [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제품 구입 시 유의사항]

- 총 처방기간은 등록 제품별 사용가능일수를 고려하여 최대 100일(최초처방은 30일)이내로 처방이 가능합니다.
- 구입 제품의 총 사용가능일수\*는 처방전의 기재된 총 처방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  
\* (총 사용가능일수) 등록 제품별 구입한 개수와 1개당 사용가능일수를 곱한 값의 합

(예시) 전극 제품 14개를 구입하고 1개당 사용가능일수가 7일인 경우 총 사용가능일수 98일(14개\*7일)

※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등록제품 1개당 사용가능일수가 모델명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([www.nhis.or.kr](http://www.nhis.or.kr))의 정책센터에서 그 내용을 확인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
⑥ 처방개수

처방전 사용기간	처방기간	※ 사용기간 내에 구입·제출하여야 합니다.
		년 월 일
의료급여기관기관명(기호) :	( )	(의료급여기관 직인)
담당의사 성명(면허번호) :	(제 호)	
전문과목(전문의 자격번호) :	(제 호)	(서명 또는 인)

210mm × 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### 유의사항

1. 처방전 발급비용은 진찰료에 포함되어 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.
2. 의사의 처방 및 지시에 따라 사용해 주십시오.
3. 처방전은 반드시 내과·소아청소년과·가정의학과 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합니다.
4. 총 처방기간은 해당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최대 100일 이내에서 처방이 가능합니다.(단, 최초처방은 30일 이내)
  - 등록제품별 '사용가능 일수(일/개)' 를 고려하여 처방기간 기재
5. 처방전 발행의사는 환자의 효과적인 당뇨 자가관리를 위해 혈당검사 기록 등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여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처방할 수 있습니다.
6.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의 기준금액은 아래 표의 일당 기준금액에 구입제품의 총 사용가능 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. 다만, 구입제품의 총 가능일수는 총 처방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
  - \* 구입 제품의 총 사용가능 일수 : 제품별 구입 개수와 사용가능 일수를 곱한 값의 합

지원대상자	일당 기준금액
제1형 당뇨병환자	10,000원

7.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의료급여와 요양비를 중복하여 받으시는 경우, 지급된 의료급여비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.

### 작성방법

- ① 교부일 이내에 환자가 처방전을 분실한 경우 “재발급”에 [✓] 표시한 후 재발행하면 됩니다.
- ② 진료받은 사람의 성명, 주민(외국인)등록번호,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.
  - 자택 및 휴대전화 중 하나를 반드시 기재합니다(휴대전화가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기재)
- ③ 확인사항 중 해당되는 모든 항목에 [✓] 표시를 한 후 내용을 기재합니다.(직전 처방기간내 사용기록 기재)
  - 날짜는 CCYYMMDD의 형식으로 표기하십시오. (예시) 20190101
  - 변동계수 혹은 표준편차와 당화혈색소 검사수치는 소수 첫째자리까지 기재합니다.
  - 가장 최근의 당화혈색소 검사 일자와 수치를 기재합니다.
- ④ 처방하고자 하는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제품명을 기재합니다.(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([www.nhis.or.kr](http://www.nhis.or.kr))의 정책센터에서 등록 제품 확인 가능)
  - 공단에 등록된 제품 외에는 당뇨 소모성재료(연속혈당 측정용 전극) 요양비 처방 불가합니다.
- ⑤ 총 처방기간은 일단위로 기재합니다.
  - 제품별 제품 1개당 사용일수를 고려하여 총 처방기간을 기재합니다.
  - 총 처방기간은 최대 100일 이내로 처방가능 합니다.(다만, 최초처방은 30일 이내)
- ⑥ 처방기간 동안 처방하는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의 개수를 기재합니다.